

목 차 LIST OF CHARTS



I	총괄	1
	전체 사건 처리	1
	연도별 전체 사건 처리	2
	조정성립률	3
	권리구제율	4
	재심유지율	6
	분쟁종결률	7
	화해율 및 인정률	8
	심판·차별사건 평균처리기간	9
	이행강제금	10
	권리구제 대리인	11
II	부문별 사건 현황	12
	노동쟁의 조정	12
	부당해고등	15
	부당노동행위	17
	복수노조	19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20
III	주요업무 처리 절차	22

일 러 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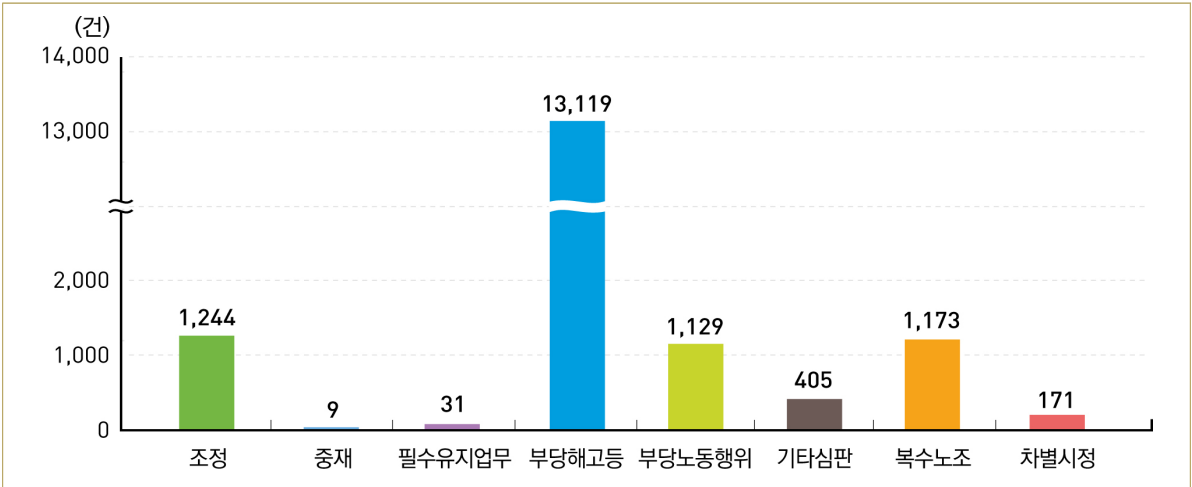
1. 본 연보에 기재된 연도별 통계는 해당 연도의 12월 말 누계 기준임
2. 본 연보에 사용된 약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1) **노동쟁의조정 사건(또는 조정사건)**: 노사관계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한 사건
 - (2) **노동쟁의중재 사건(또는 중재사건)**: 노사관계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
 - (3) **필수유지업무 사건**: 필수공익사업의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에 대한 결정을 신청한 사건
 - (4) **부당해고등 사건(또는 부해사건)**: 부당해고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사건
 - (5) **부당노동행위 사건(또는 부노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사건
 - (6) **기타심판 사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휴업이나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및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및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등을 일괄
 - (7) **복수노조 사건**: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
 - (8) **교섭요구 사건**: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하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내용 등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그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사건
 - (9) **교섭대표 사건**: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거나, 과반수 노동조합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건
 - (10) **교섭단위 사건**: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노사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신청한 사건
 - (11) **공정대표 사건**: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에 차별을 받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사건
 - (12) **차별시정 사건(또는 차별사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를 통보한 사건
3. 부해·부노·기타심판·복수노조 사건은 모두 심판위원회에서 다루나, 본 통계표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해·부노·기타심판 사건은 심판사건으로 집계하고, 노동조합간 이견을 다루는 복수노조 사건은 심판사건과 별도로 집계하였음**
4. 신청인이 부당해고등 사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각각 접수하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1건으로 병합처리한 경우에 해당 사건유형별로 각각 집계하였음

I 총괄

전체 사건 처리

- 2019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총 17,281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384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897건을 처리
- 2019년 전체 처리건수 17,281건을 사건유형별로 보면, 노동쟁의 조정(調停)사건 1,244건, 중재사건 9건, 필수유지업무 사건 31건, 부당해고등 사건 13,119건, 부당노동행위 사건 1,129건, 기타심판사건 405건, 복수노조 사건 1,173건, 차별시정 사건 171건임

2019년 사건 처리건수



노동위원회별 사건 처리건수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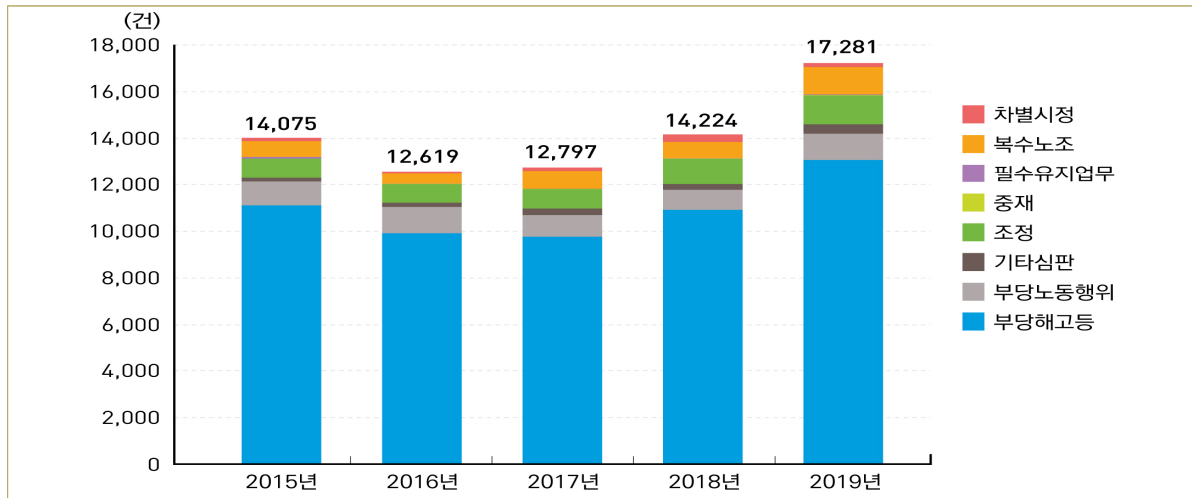
구분	합계	노동쟁의 조정 (調整)			심판				복수노조	차별
		조정 (調停)	중재	필수유지	소계	부해	부노	기타심판		
전체	17,281	1,244	9	31	14,653	13,119	1,129	405	1,173	171
(구성비)	(100.0)	(7.2)	(0.1)	(0.2)	(84.7)	(75.9)	(6.5)	(2.3)	(6.8)	(1.0)
중노위	2,384	162	3	7	1,994	1,677	292	25	177	41
(구성비)	(100.0)	(6.8)	(0.1)	(0.3)	(83.6)	(70.3)	(12.3)	(1.0)	(7.4)	(1.8)
지노위	14,897	1,082	6	24	12,659	11,442	837	380	996	130
(구성비)	(100.0)	(7.3)	(0.1)	(0.2)	(84.9)	(76.8)	(5.6)	(2.5)	(6.7)	(0.8)

주) 1. 중노위 처리건수는 재심처리건수이며, 지노위 처리건수는 필수유지업무, 부당해고등(부해), 부당노동행위(부노), 기타심판, 복수노조, 차별시정(차별) 사건의 초심처리건수임
 2.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둘 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조정 사건이며, 지노위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해당 지노위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조정사건임

연도별 전체 사건 처리

- 2019년 전체 사건처리건수는 17,281건으로 전년도 14,224건보다 21.5% 증가
- 2019년 노동쟁의 조정(調停) 사건은 전년 대비 114건(10.1%) 증가하였고, 복수노조 사건은 전년 대비 472건(67.3%) 증가하였으며, 차별시정 사건은 전년 대비 151건(46.9%) 감소
- 2019년 심판(부당해고등,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건 처리건수는 전년 대비 2,606건(21.6%) 증가하였고, 이 중 부당해고등 사건은 전년 대비 2,180건(19.9%) 증가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전년 대비 270건(31.4%) 증가

연도별 사건 처리건수



연도·노동위원회별 사건 처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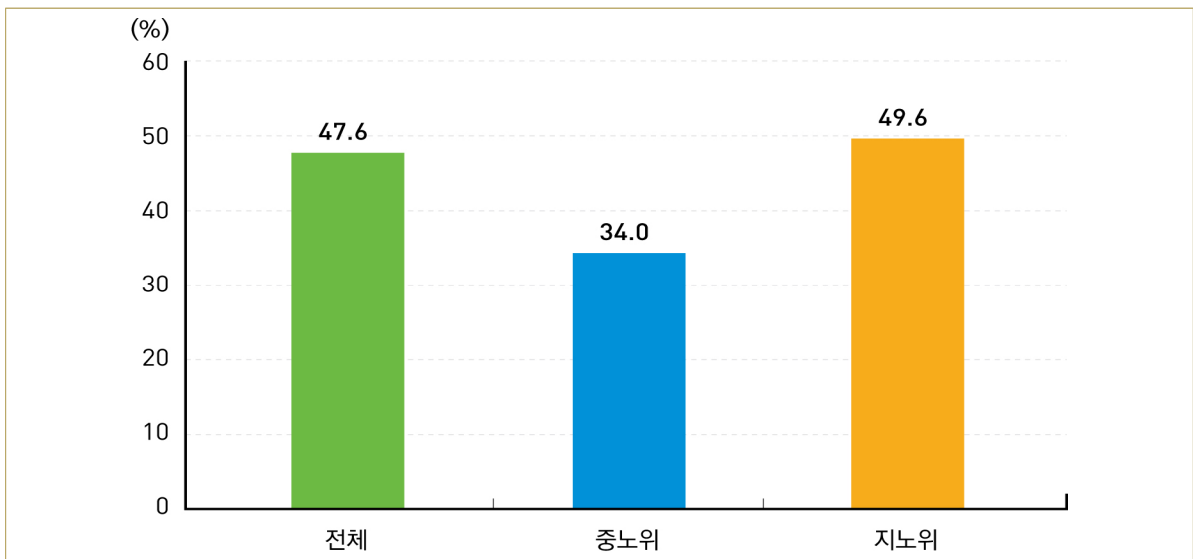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합계	노동쟁의 조정 (調整)			심판				복수노조	차별	
		조정 (調停)	중재	필수유지	소계	부해	부노	기타심판			
2015년	전 체	14,075	858	3	72	12,320	11,131	1,024	165	684	138
	중노위	1,852	116	1	1	1,570	1,305	257	8	131	33
	지노위	12,223	742	2	71	10,750	9,826	767	157	553	105
2016년	전 체	12,619	796	9	11	11,247	9,932	1,129	186	441	115
	중노위	1,952	110	3	4	1,706	1,429	264	13	97	32
	지노위	10,667	686	6	7	9,541	8,503	865	173	344	83
2017년	전 체	12,797	839	3	11	10,995	9,783	928	284	794	155
	중노위	1,814	97	1	3	1,605	1,355	238	12	71	37
	지노위	10,983	742	2	8	9,390	8,428	690	272	723	118
2018년	전 체	14,224	1,130	10	14	12,047	10,939	859	249	701	322
	중노위	1,866	131	3	3	1,523	1,322	180	21	159	47
	지노위	12,358	999	7	11	10,524	9,617	679	228	542	275
2019년	전 체	17,281	1,244	9	31	14,653	13,119	1,129	405	1,173	171
	중노위	2,384	162	3	7	1,994	1,677	292	25	177	41
	지노위	14,897	1,082	6	24	12,659	11,442	837	380	996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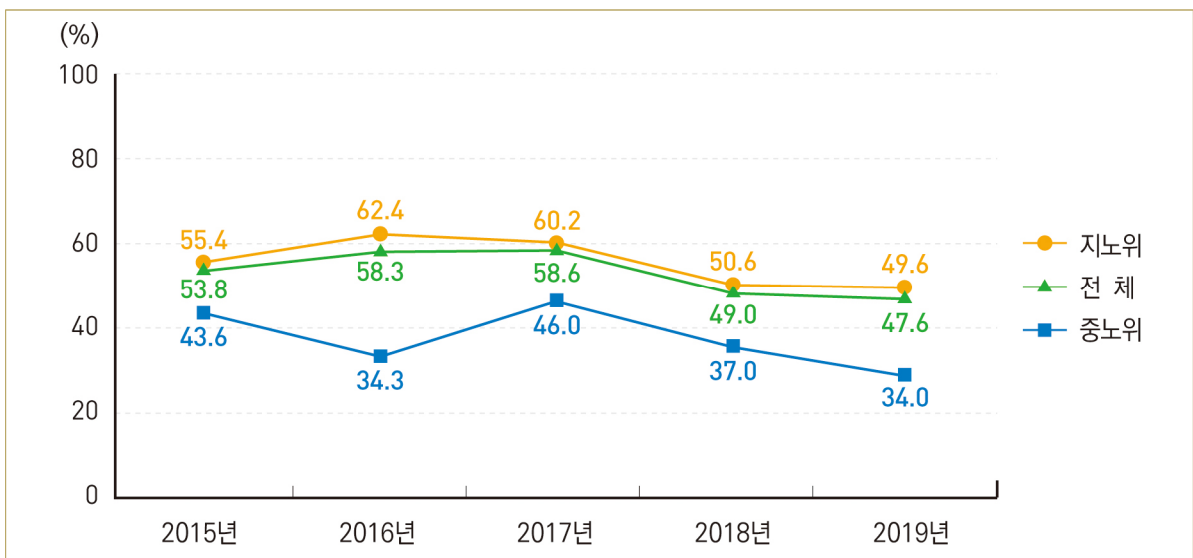
조정성립률

- 2019년에 전체 조정성립률은 47.6%였고, 그 중 중앙노동위원회는 34.0%, 지방노동위원회는 49.6%를 기록
- 2019년 전체 조정성립률은 전년도 49.0%에 비해 1.4%p 하락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은 전년도 37.0%에 비해 3.0%p 하락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은 전년도 50.6%에 비해 1.0%p 하락
-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제도변화, 신규 노동조합 및 신설사업장 조정신청 증가 등으로 인하여 조정사건 증가가 조정성립률에 영향

2019년 조정성립률



연도별 조정성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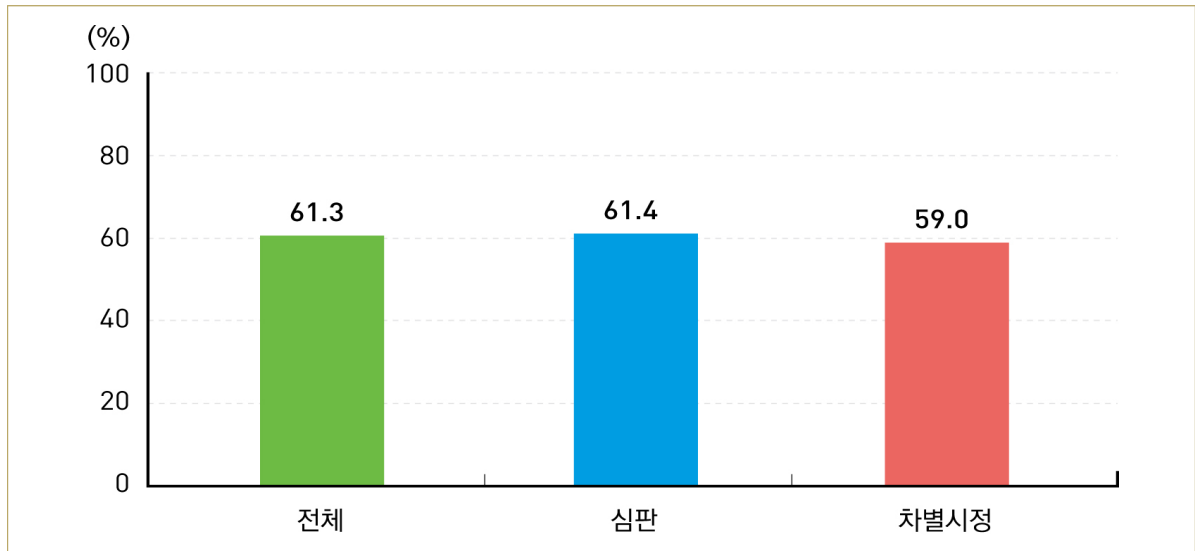


권리구제율

- 2019년에 심판사건과 차별시정 사건의 전체 권리구제율*은 61.3%였고, 그 중 심판사건의 권리구제율은 61.4%, 차별시정 사건의 권리구제율은 59.0%였음

* 권리구제율은 근로자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심판사건 중 부당해고등,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차별시정 사건만 포함(기타 심판사건 제외)하여 산정

2019년 심판사건 및 차별시정 사건의 권리구제율



2019년 노동위원회별 권리구제율

(단위: 건, %)

구분		심판사건(부해, 부노) 및 차별사건 처리건수						권리구제	권리구제율
		합계	판정			화해	취하		
			소계	인정	불인정				
합계	전 체	14,419	5,351	1,751	3,600	3,961	5,107	5,712	61.3
	중노위	2,010	1,487	513	974	200	323	713	42.3
	지노위	12,409	3,864	1,238	2,626	3,761	4,784	4,999	65.6
심판	전 체	14,248	5,261	1,711	3,550	3,929	5,058	5,640	61.4
	중노위	1,969	1,452	492	960	200	317	692	41.9
	지노위	12,279	3,809	1,219	2,590	3,729	4,741	4,948	65.6
차별	전 체	171	90	40	50	32	49	72	59.0
	중노위	41	35	21	14	0	6	21	60.0
	지노위	130	55	19	36	32	43	51	58.6

주) 1. 권리구제율 = 권리구제건수/(처리건수 - 취하건수)

2. 권리구제건수 = 인정건수 + 화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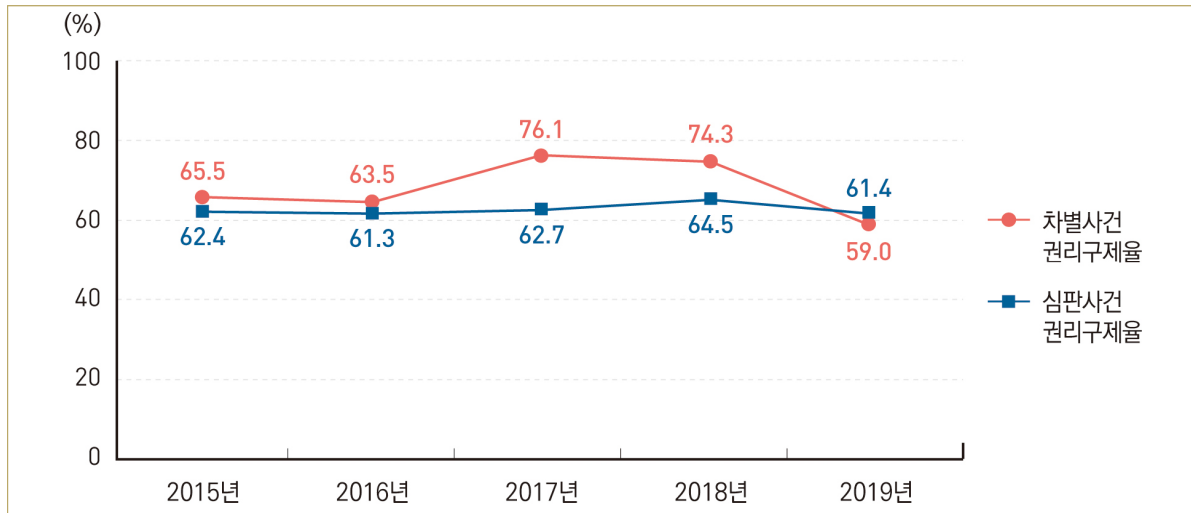
3. 인정건수는 판정 결과 노동위원회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여 구제명령 등 처분한 경우임

4. 사용자가 제기한 '장해보상예외 인정 신청' 사건 등 기타심판사건은 제외하였음

- 심판사건의 권리구제율은 전년 대비 3.1%p 감소하였고, 차별시정 사건의 권리구제율은 15.3%p 하락

※ 2018년의 경우 제주도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별시정 사건 153건(병합 105건)을 접수하였고, 모두 '화해' 처리되어 전체 차별시정 권리구제율에 영향을 미침

연도별 심판사건 및 차별시정 사건의 권리구제율



- 2019년 심판사건 및 차별시정 사건의 전체 권리구제율은 61.3%로 전년 64.8% 대비 3.5%p 감소

연도·노동위원회별 권리구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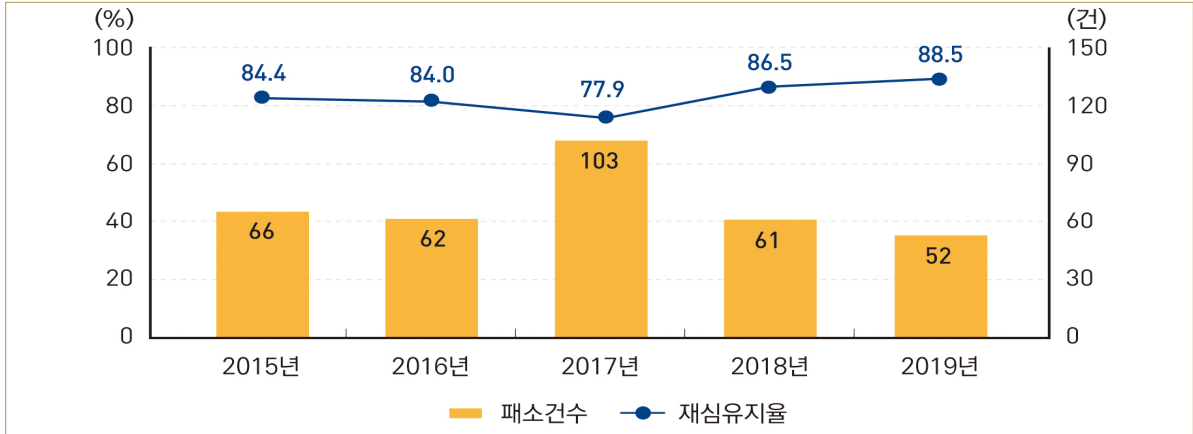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심판사건	차별시정 사건
2015년	전 체	62.4	62.4	65.5
	중노위	43.1	42.1	88.5
	지노위	66.3	66.4	55.2
2016년	전 체	61.3	61.3	63.5
	중노위	48.5	48.0	67.9
	지노위	64.3	64.3	60.9
2017년	전 체	62.9	62.7	76.1
	중노위	42.9	41.9	80.6
	지노위	67.7	67.6	74.0
2018년	전 체	64.8	64.5	74.3
	중노위	41.4	41.4	40.0
	지노위	69.2	68.9	80.6
2019년	전 체	61.3	61.4	59.0
	중노위	42.3	41.9	60.0
	지노위	65.6	65.6	58.6

재심유지율

- 2019년에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결과 재심유지율은 88.5%로써 전년 대비 2.0%p 증가
- 2019년 행정소송 종결된 453건 중 401건(88.5%)은 중노위 재심판정이 유지되었고, 52건(11.5%)은 중노위 패소로 재심판정이 취소되었음

2019년 재심유지율



연도별 재심유지율

(단위: 건, %)

구분	소송종결 건수	재심판정 유지			재심판정 취소	재심유지율
		소계	중노위 승소	소송 취하		
2015년	423	357	285	72	66	84.4
2016년	387	325	241	84	62	84.0
2017년	466	363	297	66	103	77.9
2018년	452	391	312	79	61	86.5
2019년	453	401	273	128	52	88.5

주) 재심유지율 = 재심판정유지 건수(승소건수 + 취하건수)/소송종결건수

연도별 초심유지율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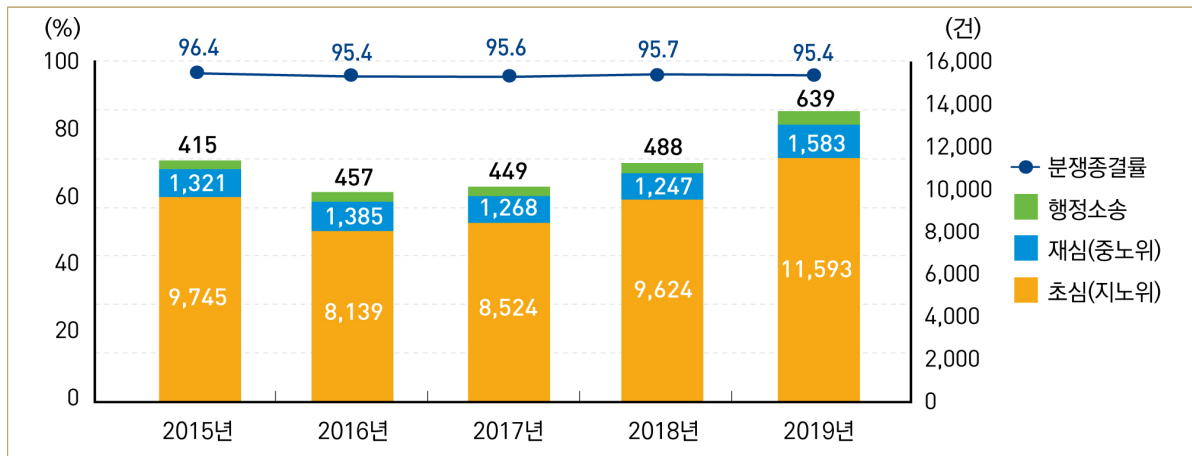
구분	초심판정 건수	재심신청 건수	재심신청률	재심 처리 건수							초심유지율
				합계	판정			화해	취하		
					소계	재심신청 기각·각하	초심취소			판정취소율	
2015년	3,223	1,668	51.8	1,603	1,147	974	173	15.1	100	356	89.2
2016년	3,242	1,695	52.3	1,738	1,196	1,009	187	15.6	137	405	89.2
2017년	2,923	1,555	53.2	1,642	1,234	1,077	157	12.7	134	274	90.4
2018년	3,364	1,716	51.0	1,570	1,149	1,023	124	10.8	158	263	92.1
2019년	4,152	2,025	48.8	2,035	1,507	1,329	178	11.8	201	327	91.3

1. 재심신청률 = 재심신청건수/초심판정건수
2. 초심유지율 = 초심유지건수/재심처리건수 = (재심신청 기각·각하건수 + 화해건수 + 취하건수)/재심처리건수
3. 판정취소율 = 초심취소건수/재심판정건수
4. 전체 심판사건 및 차별시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산정
5. 연도별 재심신청건수와 재심처리건수의 차이는 연도이월로 인한 것임

분쟁종결률

- 2019년에 지노위 전체 처리건수 14,897건 중 조정(調停)사건 1,082건을 제외한 13,815건의 4.6%(639건)만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나머지 13,176건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어 노동위원회 분쟁종결률*은 95.4%였음
- *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중 법원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화해, 합의취하, 판정 수용 등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결된 비율
- 그 중 지노위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된 건이 11,593건으로 초심 처리건수(13,815건)의 83.9%였으며, 중노위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된 건이 1,583건으로 초심 처리건수의 11.5%였음

2019년 노동위원회 사건의 처리단계별 분쟁종결 현황



연도별 노동위원회 분쟁종결률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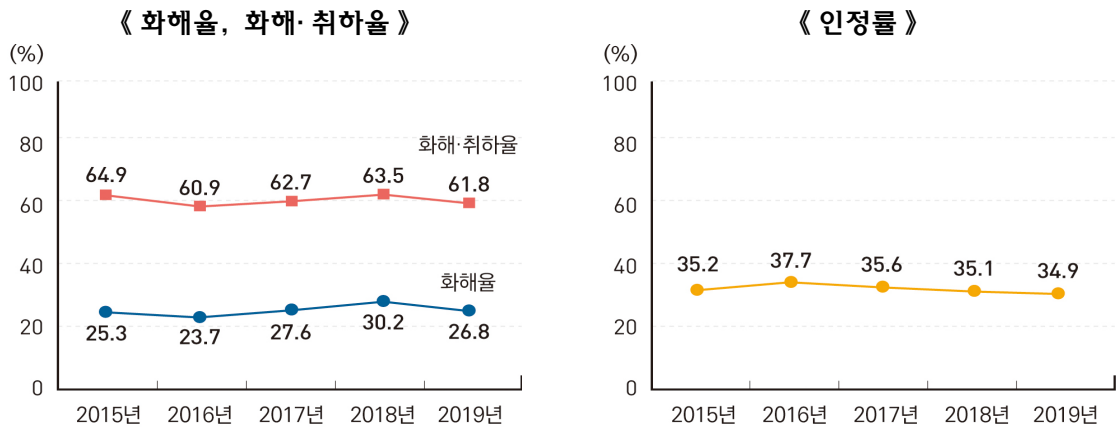
구분	지노위 처리 (A)			중노위 처리 (B)			소송 제기 (C)	노동위 분쟁종결			분쟁 종결률 (D/A)
	계	화해·취하	판정 (판정수용)	계	화해·취하	판정 (판정수용)		계 (D=A-C)	초심종결 (A-B)	재심종결 (B-C)	
2015년	11,481	7,870	3,611 (1,875)	1,736	467	1,269 (854)	415	11,066	9,745	1,321	96.4
2016년	9,981	6,539	3,442 (1,600)	1,842	565	1,277 (820)	457	9,524	8,139	1,385	95.4
2017년	10,241	7,152	3,089 (1,372)	1,717	426	1,291 (842)	449	9,792	8,524	1,268	95.6
2018년	11,359	7,657	3,702 (1,967)	1,735	439	1,296 (808)	488	10,871	9,624	1,247	95.7
2019년	13,815	9,150	4,665 (2,443)	2,222	561	1,661 (1,022)	639	13,176	11,593	1,583	95.4

- 주) 1. 분쟁종결률 = 노동위 분쟁종결건수/초심처리건수 = (초심처리건수 - 소송제기건수)/초심처리건수
 2. 지노위 판정수용건수는 지노위 판정사건 중 그에 불복하여 중노위 재심으로 진행된 사건을 뺀 것이며, 중노위 판정수용건수는 중노위 판정사건 중 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을 뺀 것임
 3. 사건처리건수, 소송제기건수는 심판사건(부해·부노·기타심판), 차별사건 외에 복수노조사건, 중재사건, 필수유지업무 사건 등 행정소송 대상인 사건을 모두 합한 것이며,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조정(調停)사건은 제외하였음
 4. 초심처리건수, 재심판정건수, 소송제기건수는 해당연도의 1년간 실적치이며, 소송제기를 및 분쟁종결률은 소송제기까지 기간 소요로 인한 연도이월(전년도 말 재심판정에 대해 다음 해 초에 소 제기) 등으로 오차 있음

화해율 및 인정률

- 2019년에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심판사건 및 차별시정 사건 14,824건 중 3,966건 (26.8%)에서 화해가 성립되었고, 5,199건(35.1%)은 당사자 합의 등으로 취하하여 화해·취하율은 61.8%였음
 - 2019년 화해율은 전년 대비 3.4%p 감소하였고, 화해·취하율은 전년 대비 1.7%p 감소하였음
- 2019년에 판정까지 진행된 사건 5,659건 중 1,974건에서 구제신청이 인정되었고, 인정률은 34.9%로 전년(35.1%) 대비 0.2%p 감소하였음

심판사건 및 차별시정 사건의 화해율, 화해·취하율, 인정률



전체 심판사건 및 차별시정 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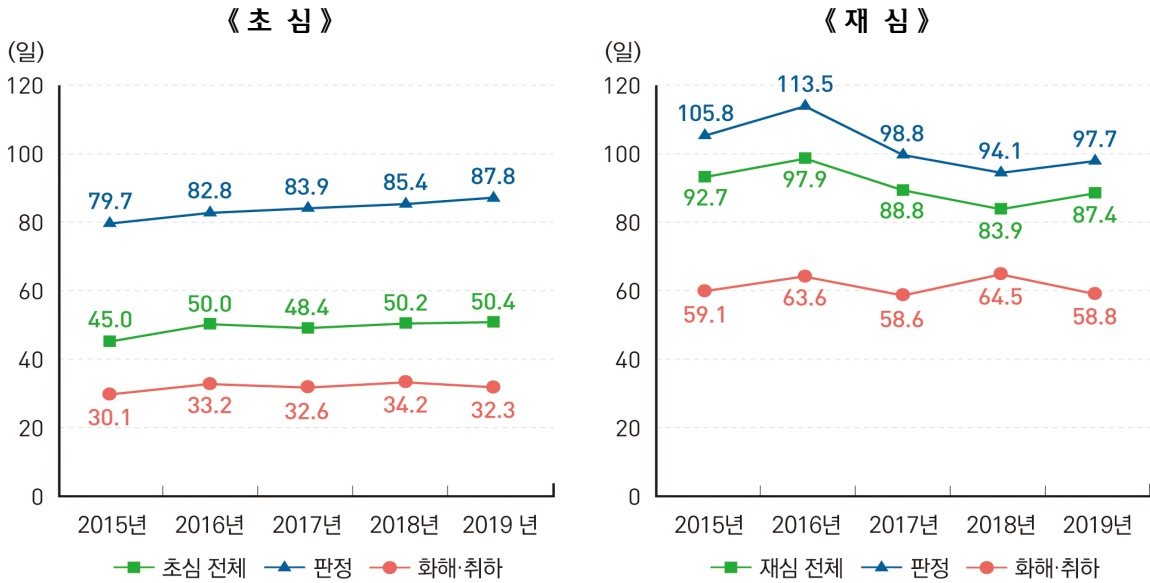
구분	심판사건 및 차별사건 처리건수							화해율	화해·취하율	인정률	
	합계	판정				화해	취하				
		소계	인정	기각	각하						
2015년	전 체	12,458	4,370	1,540	1,996	834	3,153	4,935	25.3	64.9	35.2
	중노위	1,603	1,147	438	528	181	100	356	6.2	28.4	38.2
	지노위	10,855	3,223	1,102	1,468	653	3,053	4,579	28.1	70.3	34.2
2016년	전 체	11,362	4,438	1,674	1,969	795	2,693	4,231	23.7	60.9	37.7
	중노위	1,738	1,196	508	509	179	137	405	7.9	31.2	42.5
	지노위	9,624	3,242	1,166	1,460	616	2,556	3,826	26.6	66.3	36.0
2017년	전 체	11,150	4,157	1,479	1,913	765	3,072	3,921	27.6	62.7	35.6
	중노위	1,642	1,234	451	591	192	134	274	8.2	24.8	36.5
	지노위	9,508	2,923	1,028	1,322	573	2,938	3,647	30.9	69.3	35.2
2018년	전 체	12,369	4,513	1,585	2,111	817	3,730	4,126	30.2	63.5	35.1
	중노위	1,570	1,149	376	587	186	158	263	10.1	26.8	32.7
	지노위	10,799	3,364	1,209	1,524	631	3,572	3,863	33.1	68.8	35.9
2019년	전 체	14,824	5,659	1,974	2,761	924	3,966	5,199	26.8	61.8	34.9
	중노위	2,035	1,507	519	800	188	201	327	9.9	25.9	34.4
	지노위	12,789	4,152	1,455	1,961	736	3,765	4,872	29.4	67.5	35.0

- 주) 1. 화해율 = 화해건수/처리건수
 2. 화해·취하율 = (화해건수 + 취하건수)/처리건수
 3. 인정률 = 인정건수/판정건수

심판·차별사건 평균처리기간

- 2019년에 초심(지노위) 심판사건과 차별시정 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50.4일로서 전년도 50.2일보다 0.2일 증가되었고, 재심(중노위) 심판사건과 차별시정 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87.4일로서 전년도 83.9일보다 3.5일 증가
- ☞ 2019년 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차별시정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약 55.5일로서, 재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행정소송(1심, 2019년 기준) 평균처리기간 약 292일에 비해 5배 이상 신속하게 처리

연도별 초심·재심별 평균처리일수



연도별 심판사건 및 차별시정 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른 평균처리일수

(단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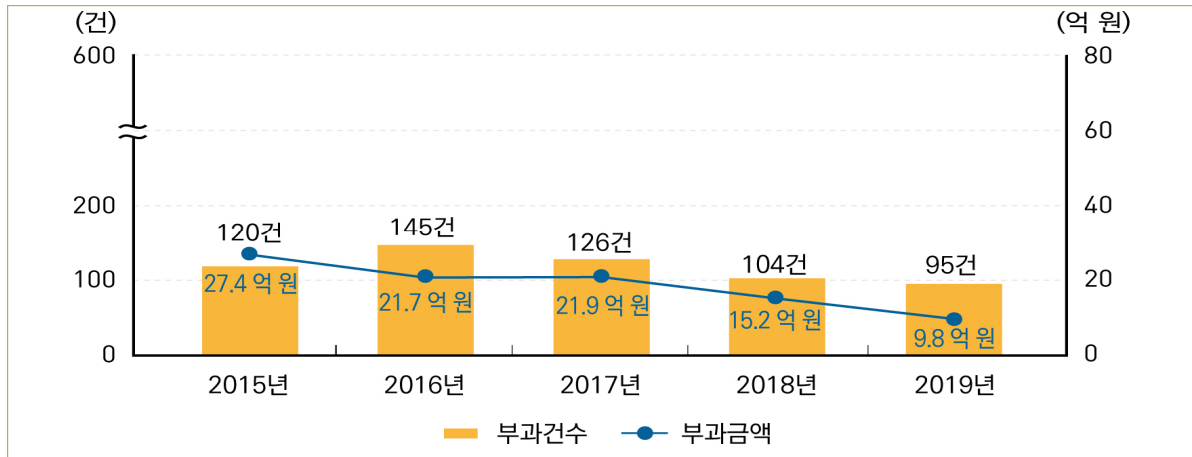
구분	초심 (지노위)			재심 (중노위)		
	전체	판정	화해·취하	전체	판정	화해·취하
2015년	45.0	79.7	30.1	92.7	105.8	59.1
2016년	50.0	82.8	33.2	97.9	113.5	63.6
2017년	48.4	83.9	32.6	88.8	98.8	58.6
2018년	50.2	85.4	34.2	83.9	94.1	64.5
2019년	50.4	87.8	32.3	87.4	97.7	58.8

- 주) 1. 판정 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판정서 송부일까지의 평균 소요일수이며, 화해·취하 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화해·취하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의 평균 소요일수임
2. 재심의 평균처리일수가 초심보다 긴 것은 초심은 당사자간 화해 또는 합의 취하하는 비율이 높으나, 재심은 판정까지 진행된 사건이 많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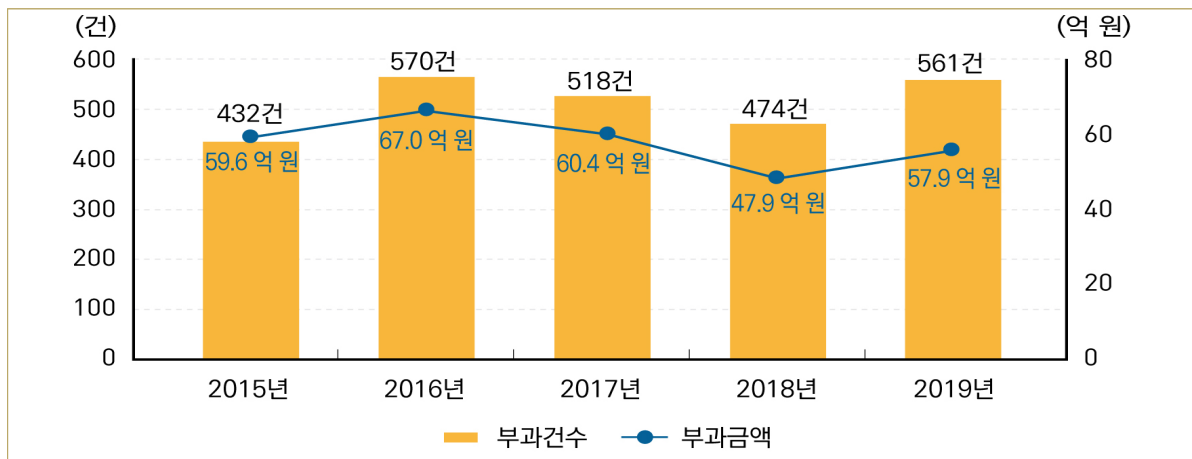
이행강제금

- 2019년에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총 65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67.7억 원을 부과
 - 중노위는 9.8억 원(95건)을 부과하고, 지노위는 57.9억 원(561건)을 부과

연도별 재심(중노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연도별 초심(지노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연도·노동위원회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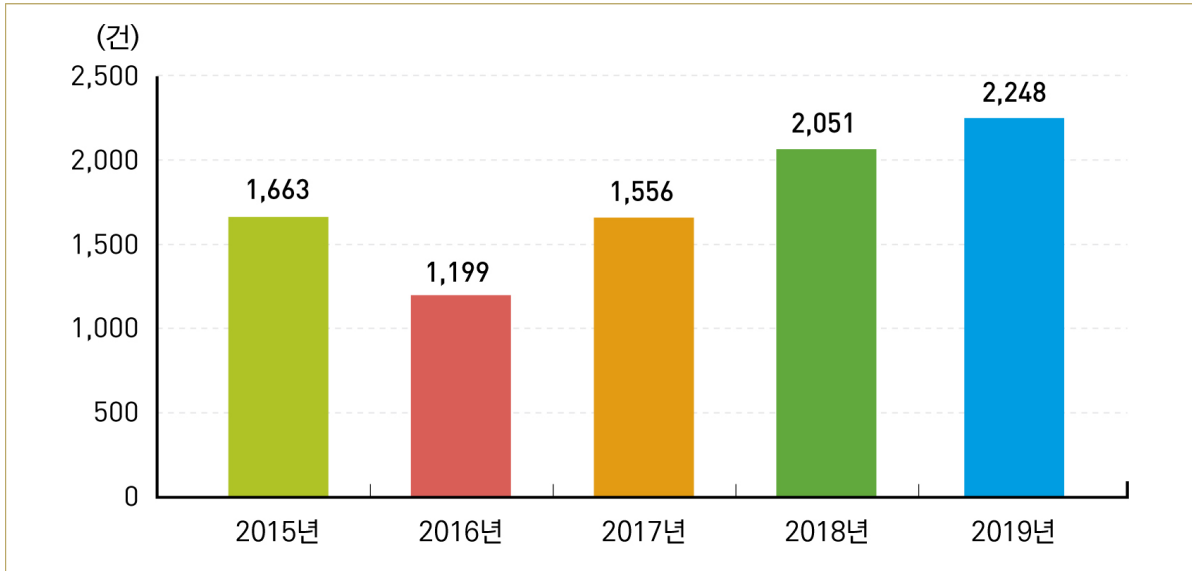
(단위: 건, 억 원)

구분	합계		중노위		지노위	
	부과건수	부과금액	부과건수	부과금액	부과건수	부과금액
2015년	552	87.0	120	27.4	432	59.6
2016년	715	88.7	145	21.7	570	67.0
2017년	644	82.3	126	21.9	518	60.4
2018년	578	63.2	104	15.2	474	47.9
2019년	656	67.7	95	9.8	561	57.9

권리구제 대리인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또는 차별시정 신청 등을 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건수는 2019년에 2,248건으로 전년도 2,051건 대비 197건(9.6%) 증가

연도별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건수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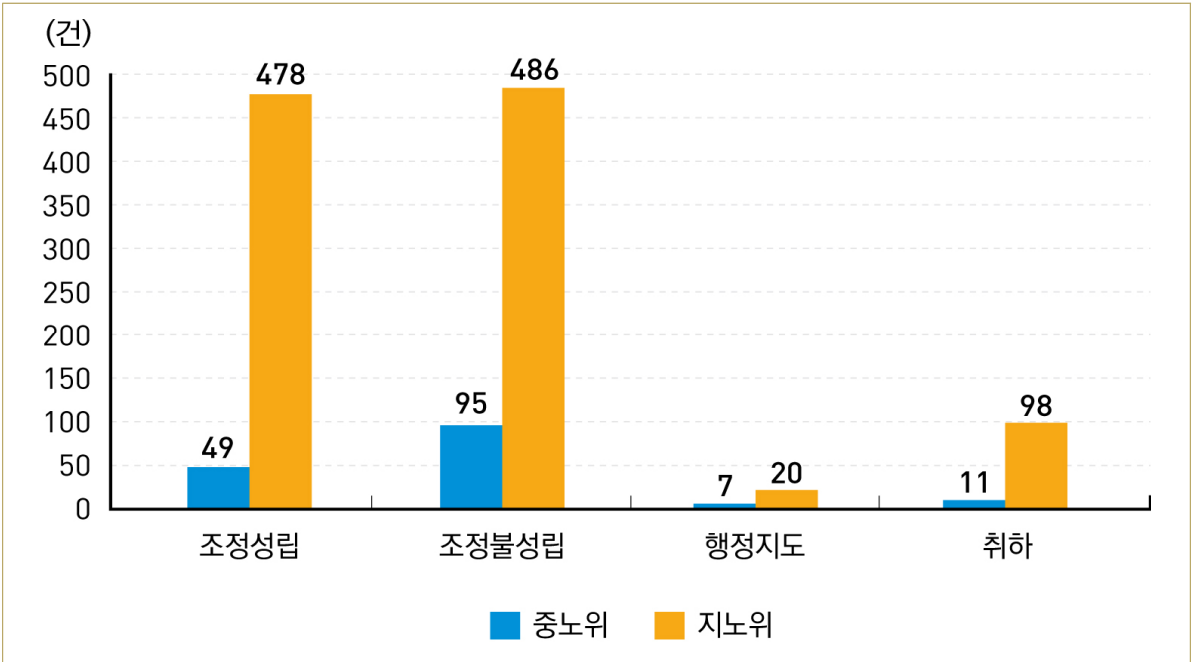


II 부문별 사건 현황

노동쟁의 조정

- 2019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총 1,244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62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82건을 처리
- 2019년에는 조정성립(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527건, 조정 불성립(조정안 거부, 조정중지) 581건, 행정지도 27건, 취하 109건

2019년 조정사건 처리건수



2019년 조정사건 처리결과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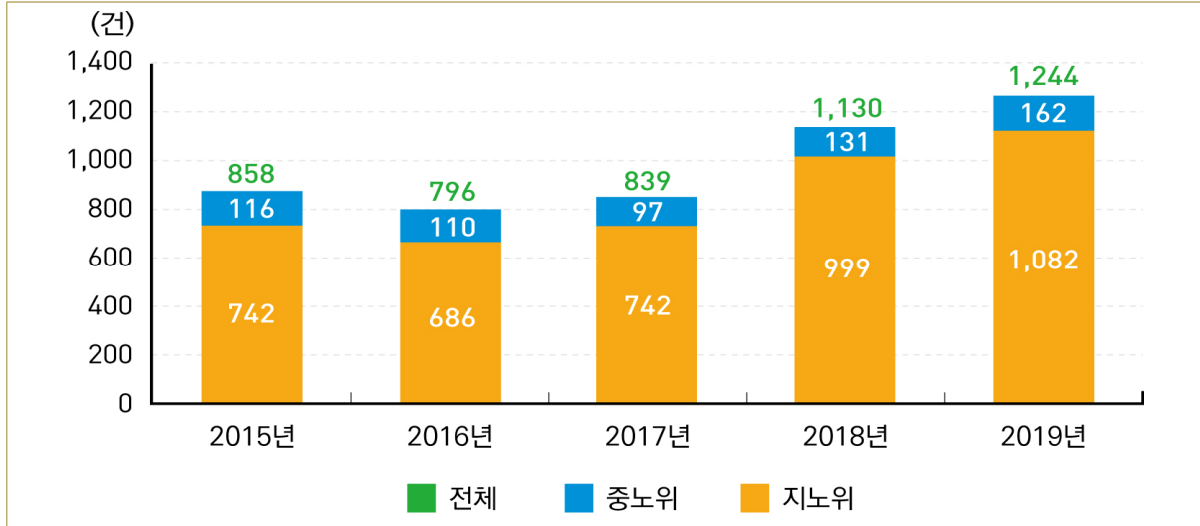
구분	처리 건수	조정성립+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조정 성립률
		합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소계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전 체	1,244	1,108	527	198	329	581	39	542	27	109	47.6
중노위	162	144	49	24	25	95	4	91	7	11	34.0
지노위	1,082	964	478	174	304	486	35	451	20	98	49.6

주)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건수/(조정처리건수 - (행정지도건수 + 취하건수))

- 2019년 조정사건 처리건수는 총 1,244건으로 전년도 1,130건보다 10.1% 증가하였으며, 그 중 중앙노동위원회 처리건수는 162건으로 전년도 131건보다 23.7% 증가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처리건수는 1,082건으로 전년도 999건보다 8.3% 증가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제도변화, 신규 노동조합 및 신설사업장 조정 신청 증가 등으로 인하여 조정사건 증가

연도별 조정사건 처리건수



연도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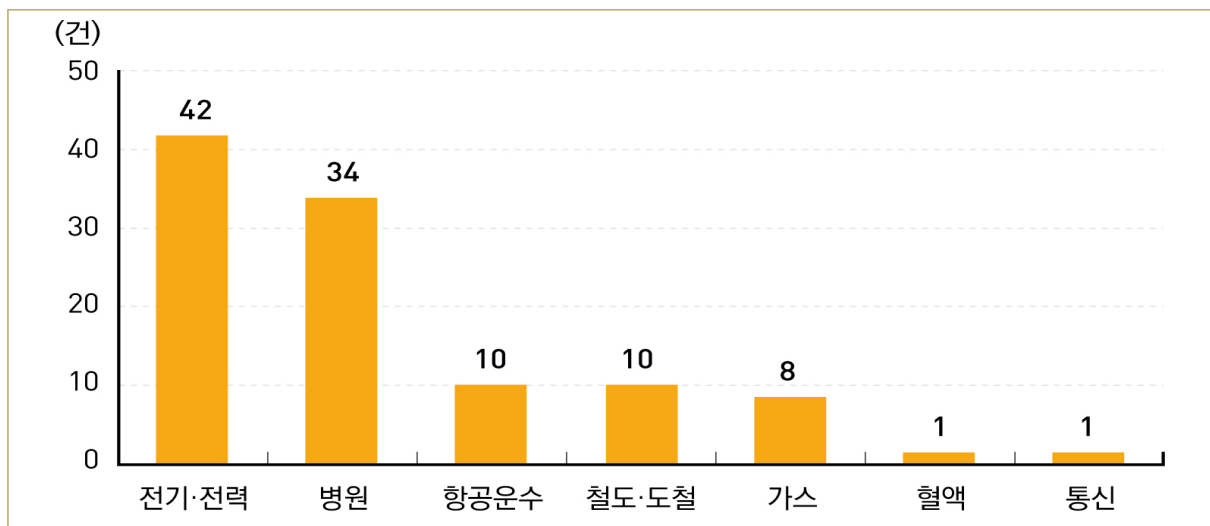
구분	처리 건수	조정성립+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조정 성립률
		합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소계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년	전 체	858	710	382	148	234	328	51	277	42	106	53.8
	중노위	116	94	41	14	27	53	10	43	5	17	43.6
	지노위	742	616	341	134	207	275	41	234	37	89	55.4
2016년	전 체	796	703	410	161	249	293	32	261	14	79	58.3
	중노위	110	102	35	17	18	67	10	57	3	5	34.3
	지노위	686	601	375	144	231	226	22	204	11	74	62.4
2017년	전 체	839	756	443	188	255	313	47	266	16	67	58.6
	중노위	97	87	40	18	22	47	8	39	3	7	46.0
	지노위	742	669	403	170	233	266	39	227	13	60	60.2
2018년	전 체	1,130	1,027	503	209	294	524	37	487	17	86	49.0
	중노위	131	119	44	16	28	75	6	69	2	10	37.0
	지노위	999	908	459	193	266	449	31	418	15	76	50.6
2019년	전 체	1,244	1,108	527	198	329	581	39	542	27	109	47.6
	(전년대비)	(114)	(81)	(24)	(△11)	(35)	(57)	(2)	(55)	(10)	(23)	(△1.4%p)
	중노위	162	144	49	24	25	95	4	91	7	11	34.0
	(전년대비)	(31)	(25)	(5)	(8)	(△3)	(20)	(△2)	(22)	(5)	(1)	(△3.0%p)
지노위	1,082	964	478	174	304	486	35	451	20	98	49.6	
(전년대비)	(83)	(56)	(19)	(△19)	(38)	(37)	(4)	(33)	(5)	(22)	(△1.0%p)	

- 2008년 필수유지업무 도입 이후 총 275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입 초기인 2008년에 사건 접수가 집중되었으나,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접수되고 있음
- 총 275건 중 전기·전력 사업 42건, 병원 34건 등 106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였고, 169건은 취하됨

■ 업종별 필수유지업무 결정 현황

(단위: 건)

계	전기·전력	병원	항공운수	철도·도철	가스	혈액	통신
106	42	34	10	10	8	1	1



주) 초심 지노위의 결정건수 기준임

■ 연도별 필수유지업무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처리		결정		취하	
	건수	누계	건수	누계	건수	누계
2008년	95	95	48	48	47	47
2009년	20	115	14	62	6	53
2010년	12	127	10	72	2	55
2011년	5	132	3	75	2	57
2012년	2	134	2	77	0	57
2013년	9	143	6	83	3	60
2014년	30	173	2	85	28	88
2015년	53	226	6	91	47	135
2016년	7	233	3	94	4	139
2017년	7	240	4	98	3	142
2018년	11	251	6	104	5	147
2019년	24	275	2	106	22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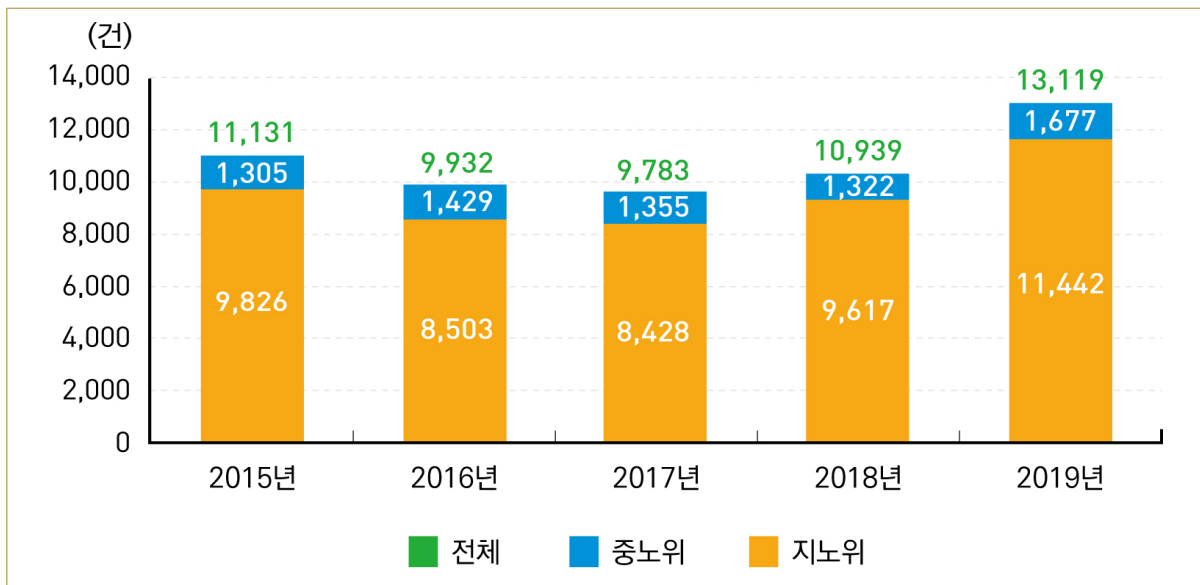
주) 1. 초심 지노위의 처리건수 기준임

2. 2015년에는 통신업종(협력업체)에서 필수유지업무 사건이 다수 접수(모두 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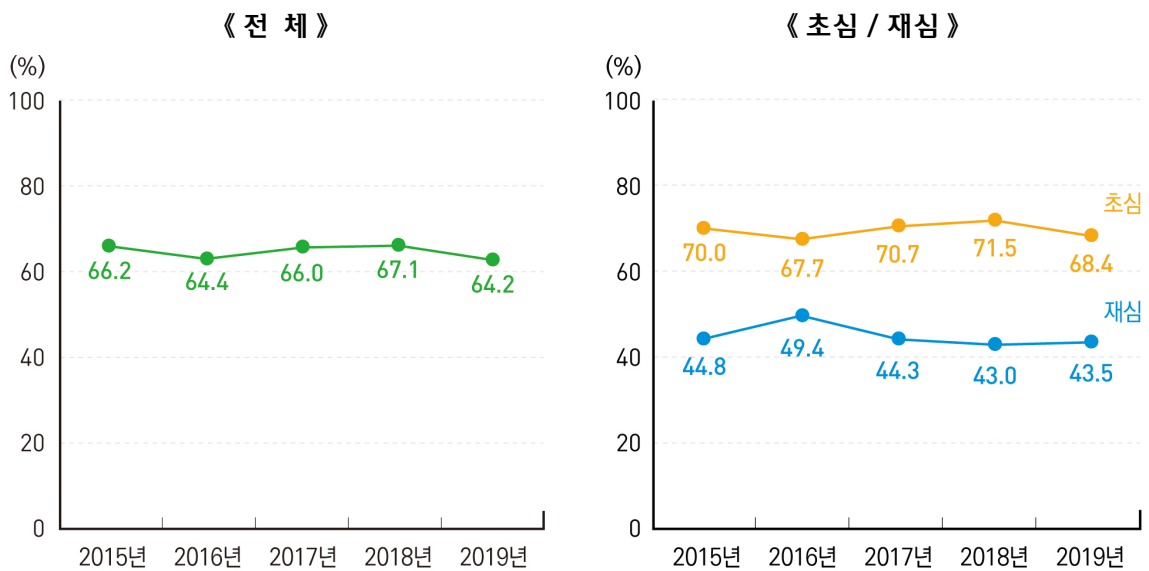
부당해고등

- 2019년 부당해고등 사건의 전체 처리건수는 13,119건(초심 11,442건, 재심 1,677건)으로 전년도 10,939건(초심 9,617건, 재심 1,322건)보다 2,180건(19.9%) 증가
- 2019년 부당해고등 사건의 권리구제율은 64.2%(초심 68.4%, 재심 43.5%)로 전년도 67.1%(초심 71.5%, 재심 43.0%)보다 2.9%p 감소
 - 2019년 부당해고등 사건의 화해율은 29.3%(초심 32.0%, 재심 11.3%)로 전년도 32.0%(초심 35.0%, 재심 10.6%)보다 2.7%p 감소

연도별 부당해고등 사건 처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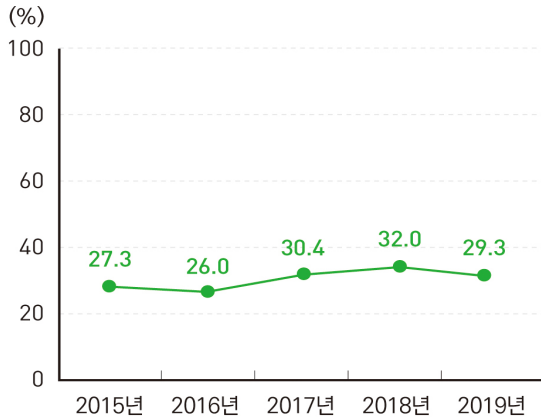


연도별 부당해고등 사건의 권리구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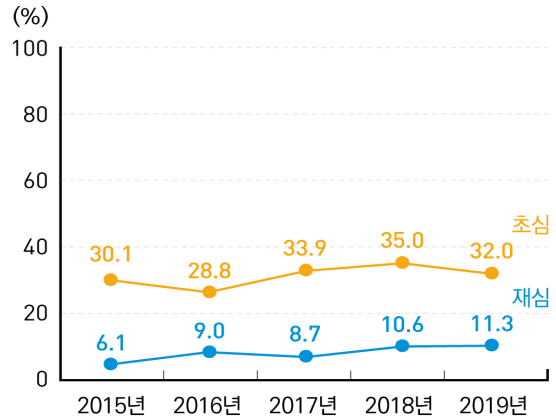


연도별 부당해고등 사건의 화해율

《 전 체 》



《 초심 / 재심 》



연도별 부당해고등 사건 처리결과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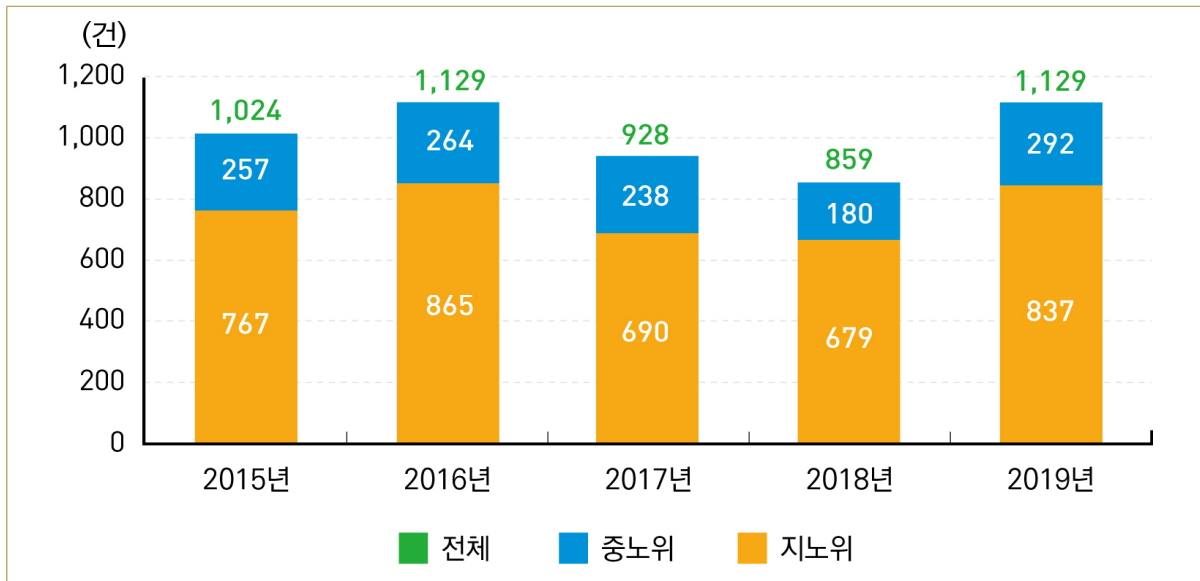
구분	처리 건수	판정					화해	화해율	취하	권리구제율	
		소계	인정	기각	각하	인정률					
2015년	전 체	11,131	3,563	1,329	1,464	770	37.3	3,042	27.3	4,526	66.2
	중노위	1,305	925	370	387	168	40.0	80	6.1	300	44.8
	지노위	9,826	2,638	959	1,077	602	36.4	2,962	30.1	4,226	70.0
2016년	전 체	9,932	3,605	1,404	1,442	759	38.9	2,581	26.0	3,746	64.4
	중노위	1,429	978	418	386	174	42.7	128	9.0	323	49.4
	지노위	8,503	2,627	986	1,056	585	37.5	2,453	28.8	3,423	67.7
2017년	전 체	9,783	3,383	1,223	1,461	699	36.2	2,972	30.4	3,428	66.0
	중노위	1,355	1,007	380	453	174	37.7	118	8.7	230	44.3
	지노위	8,428	2,376	843	1,008	525	35.5	2,854	33.9	3,198	70.7
2018년	전 체	10,939	3,767	1,378	1,629	760	36.6	3,504	32.0	3,668	67.1
	중노위	1,322	961	333	457	171	34.7	140	10.6	221	43.0
	지노위	9,617	2,806	1,045	1,172	589	37.2	3,364	35.0	3,447	71.5
2019년	전 체	13,119	4,491	1,506	2,142	843	33.5	3,846	29.3	4,782	64.2
	중노위	1,677	1,215	422	625	168	34.7	189	11.3	273	43.5
	지노위	11,442	3,276	1,084	1,517	675	33.1	3,657	32.0	4,509	68.4

- 주) 1. 인정률 = 인정건수/판정건수
 2. 인정건수는 판정 결과 노동위원회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여 구제명령 등 처분한 경우임
 3. 화해율 = 화해건수/전체처리건수
 4. 권리구제율 = 권리구제건수/(전체처리건수 - 취하건수)
 5. 권리구제건수 = 인정건수 + 화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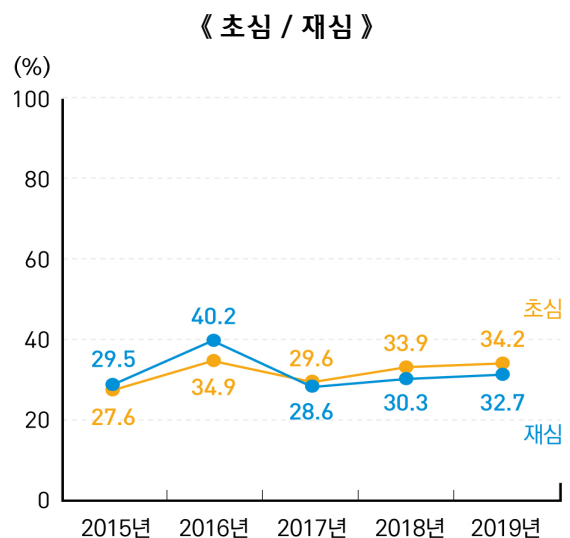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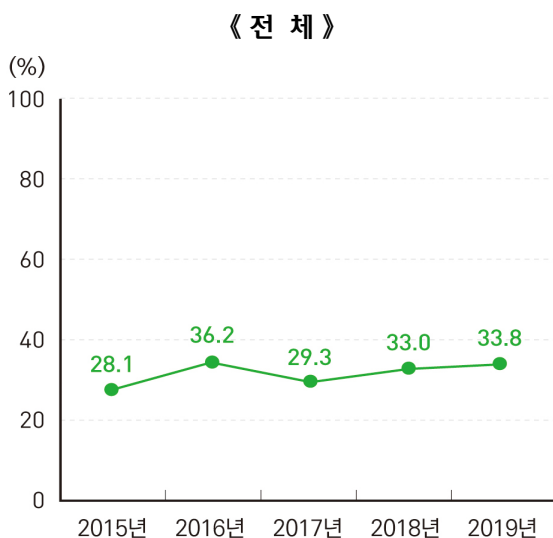
부당노동행위

- 2019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전체 처리건수는 1,129건(초심 837건, 재심 292건)으로 전년도 859건(초심 679건, 재심 180건)보다 270건(31.4%) 증가
- 2019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권리구제율은 33.8%(초심 34.2%, 재심 32.7%)로 전년도 33.0%(초심 33.9%, 재심 30.3%)보다 0.8%p 상승
 - 2019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인정률은 26.6%(초심 25.3%, 재심 29.5%)로 전년도 21.6%(초심 21.7%, 재심 21.5%)보다 5.0%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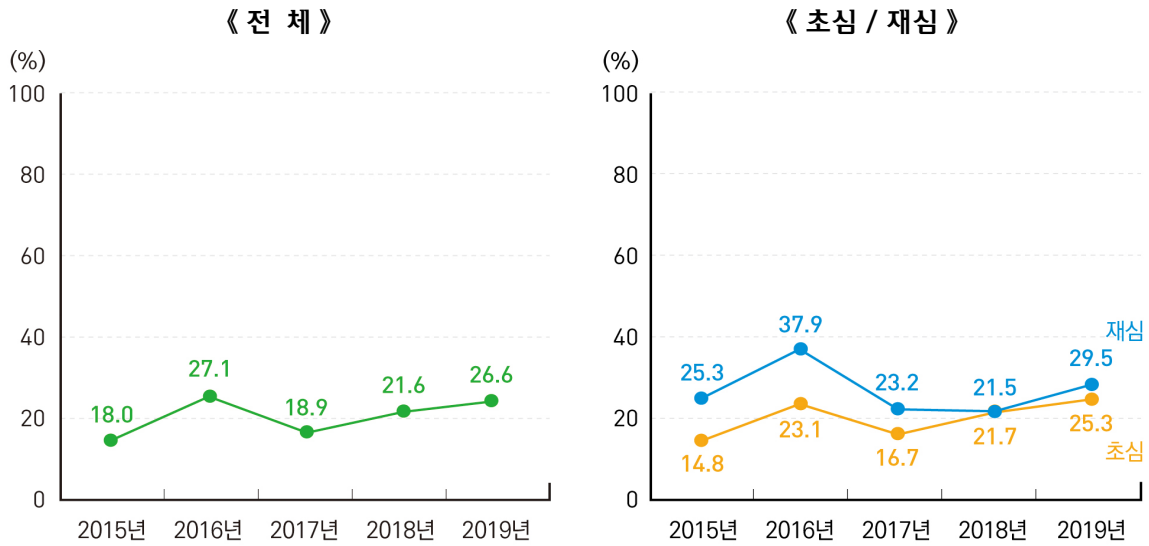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건수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권리구제율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인정률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결과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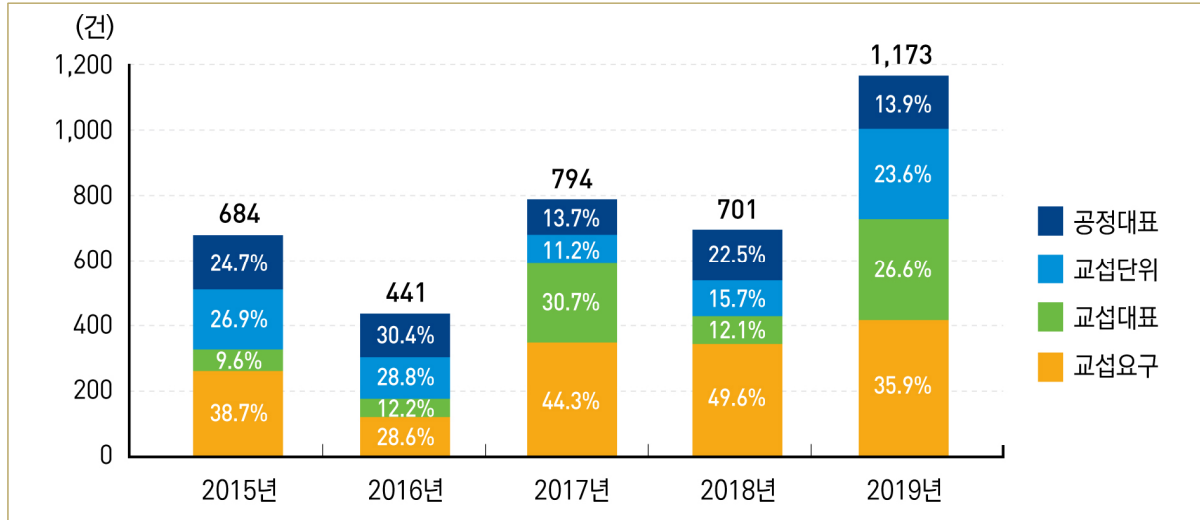
구분	처리 건수	판정					화해	화해율	취하	권리 구제율	
		소계	인정	기각	각하	인정률					
2015년	전 체	1,024	645	116	482	47	18.0	91	8.9	288	28.1
	중노위	257	198	50	136	12	25.3	12	4.7	47	29.5
	지노위	767	447	66	346	35	14.8	79	10.3	241	27.6
2016년	전 체	1,129	675	183	476	16	27.1	96	8.5	358	36.2
	중노위	264	182	69	112	1	37.9	7	2.7	75	40.2
	지노위	865	493	114	364	15	23.1	89	10.3	283	34.9
2017년	전 체	928	545	103	408	34	18.9	80	8.6	303	29.3
	중노위	238	185	43	129	13	23.2	14	5.9	39	28.6
	지노위	690	360	60	279	21	16.7	66	9.6	264	29.6
2018년	전 체	859	513	111	383	19	21.6	87	10.1	259	33.0
	중노위	180	135	29	101	5	21.5	17	9.4	28	30.3
	지노위	679	378	82	282	14	21.7	70	10.3	231	33.9
2019년	전 체	1,129	770	205	522	43	26.6	83	7.4	276	33.8
	중노위	292	237	70	154	13	29.5	11	3.8	44	32.7
	지노위	837	533	135	368	30	25.3	72	8.6	232	34.2

주)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권리구제율이 부당해고등 사건에 비해 낮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당사자간 화해율이 10% 안팎으로 낮고, 부노·부해 병합사건의 경우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 등에 기인

복수노조

- 2019년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건수는 1,173건(초심 996건, 재심 177건)으로 전년도 701건(초심 542건, 재심 159건)보다 472건 증가하였고, 그 중 교섭요구 사건(421건, 35.9%)과 교섭대표 사건(312건, 26.6%)의 비율이 높았음

연도 · 유형별 복수노조 사건 처리건수



연도별 복수노조 사건 처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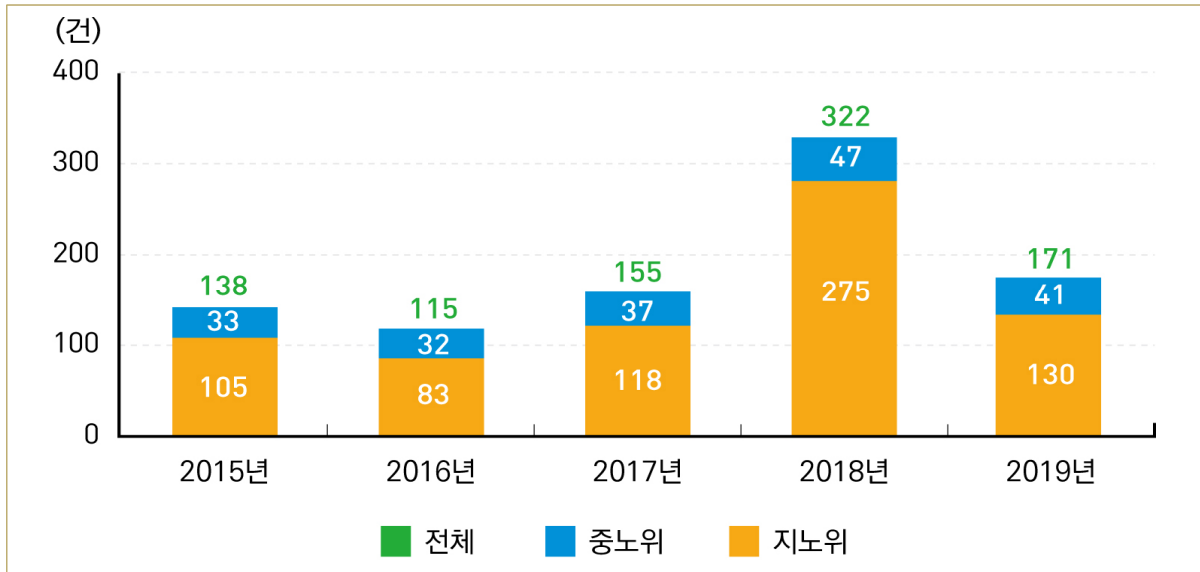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처리 합계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처리	비율	처리	비율	처리	비율	처리	비율	
2015년	전 체	684	38.7	66	9.6	184	26.9	169	24.7	
	중노위	131	15	17	13.0	33	25.2	66	50.4	
	지노위	553	250	45.2	49	8.9	151	27.3	103	18.6
2016년	전 체	441	28.6	54	12.2	127	28.8	134	30.4	
	중노위	97	22	8	8.2	25	25.8	42	43.3	
	지노위	344	104	30.2	46	13.4	102	29.7	92	26.7
2017년	전 체	794	44.3	244	30.7	89	11.2	109	13.7	
	중노위	71	12	17	23.9	11	15.5	31	43.7	
	지노위	723	340	47.0	227	31.4	78	10.8	78	10.8
2018년	전 체	701	49.6	85	12.1	110	15.7	158	22.5	
	중노위	159	62	39.0	27	17.0	18	11.3	52	32.7
	지노위	542	286	52.8	58	10.7	92	17.0	106	19.6
2019년	전 체	1,173	35.9	312	26.6	277	23.6	163	13.9	
	중노위	177	85	48.0	16	9.0	36	20.4	40	22.6
	지노위	996	336	33.7	296	29.7	241	24.2	123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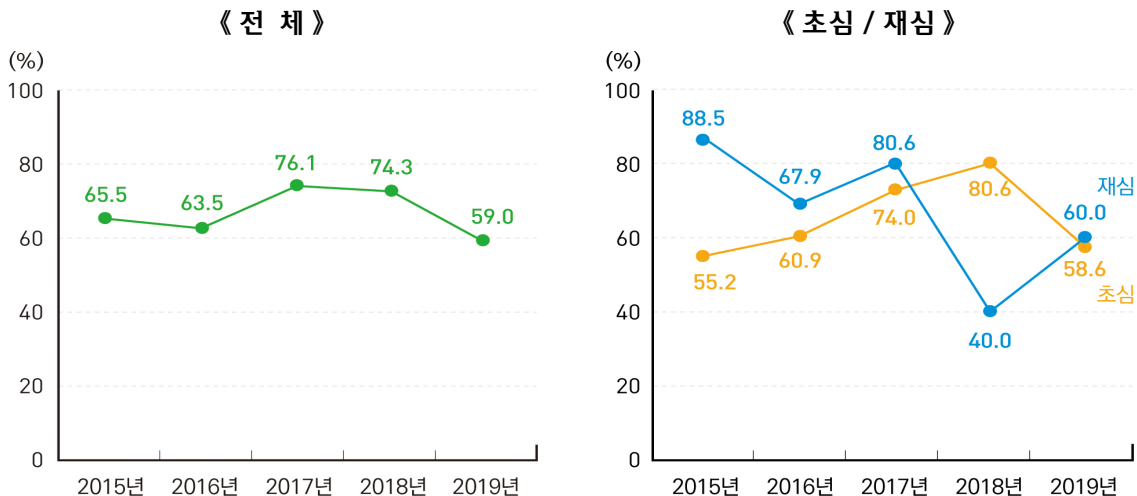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 2019년 차별시정 사건의 전체 처리건수는 171건(초심 130건, 재심 41건)으로 전년도 322건(초심 275건, 재심 47건)보다 151건(46.9%) 감소
- 2019년 차별시정 사건의 권리구제율은 59.0%(초심 58.6%, 재심 60.0%)로 전년도 74.3%(초심 80.6%, 재심 40.0%)보다 15.3%p 감소
 - 2019년 차별시정 사건의 인정률은 44.4%(초심 34.5%, 재심 60.0%)로 전년도 37.0%(초심 36.2%, 재심 38.2%)보다 7.4%p 증가
- ※ 2018년의 경우 제주도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별시정 사건 153건(병합 105건)을 접수하였고, 모두 '화해' 처리되어 전체 차별시정 권리구제율에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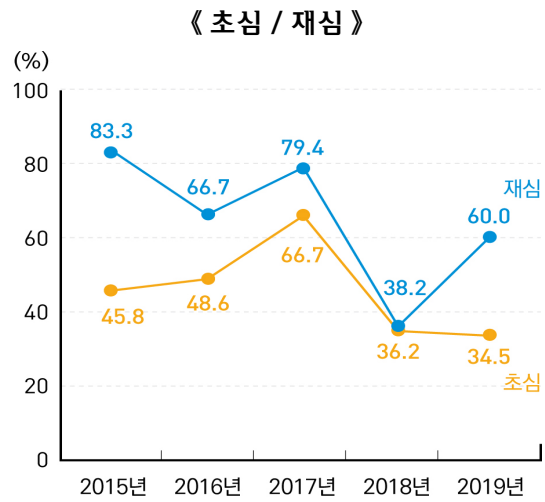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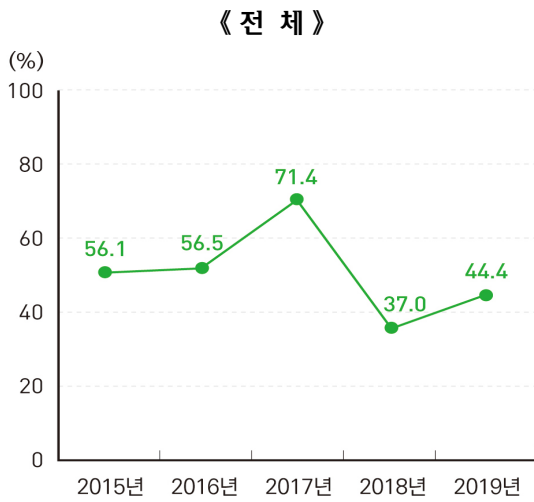
연도별 차별시정 사건 처리건수



연도별 차별시정 사건의 권리구제율



연도별 차별시정 사건의 인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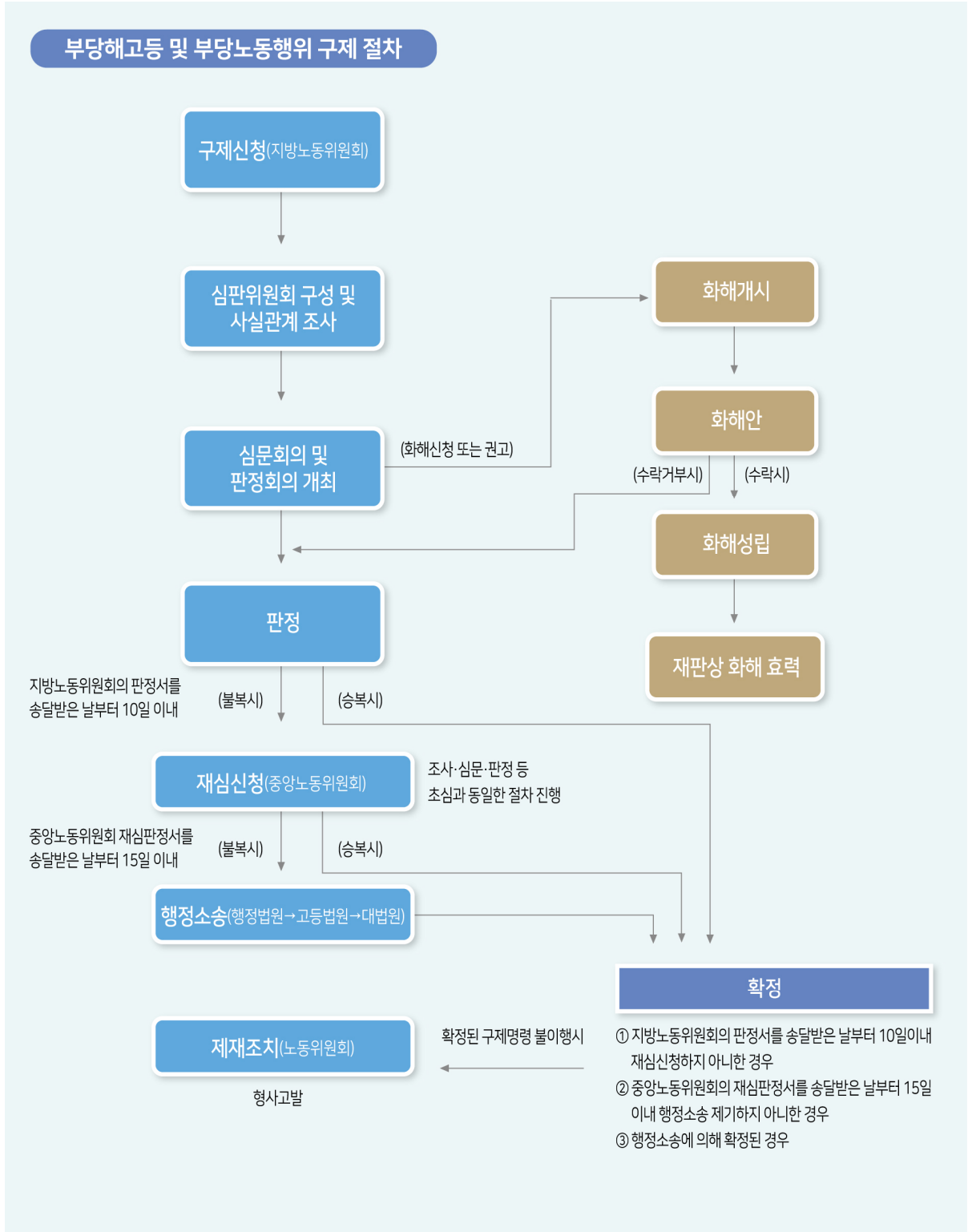
연도별 차별시정 사건 처리결과

(단위: 건, %)

구분	처리 건수	판정					화해	화해율	취하	권리 구제율	
		소계	인정	기각	각하	인정률					
2015년	전체	138	66	37	26	3	56.1	18	13.0	54	65.5
	중노위	33	18	15	3	0	83.3	8	24.2	7	88.5
	지노위	105	48	22	23	3	45.8	10	9.5	47	55.2
2016년	전체	115	62	35	17	10	56.5	12	10.4	41	63.5
	중노위	32	27	18	6	3	66.7	1	3.1	4	67.9
	지노위	83	35	17	11	7	48.6	11	13.3	37	60.9
2017년	전체	155	91	65	13	13	71.4	18	11.6	46	76.1
	중노위	37	34	27	5	2	79.4	2	5.4	1	80.6
	지노위	118	57	38	8	11	66.7	16	13.6	45	74.0
2018년	전체	322	92	34	46	12	37.0	134	41.6	96	74.3
	중노위	47	34	13	16	5	38.2	1	2.1	12	40.0
	지노위	275	58	21	30	7	36.2	133	48.4	84	80.6
2019년	전체	171	90	40	30	20	44.4	32	18.7	49	59.0
	중노위	41	35	21	11	3	60.0	0	0	6	60.0
	지노위	130	55	19	19	17	34.5	32	24.6	43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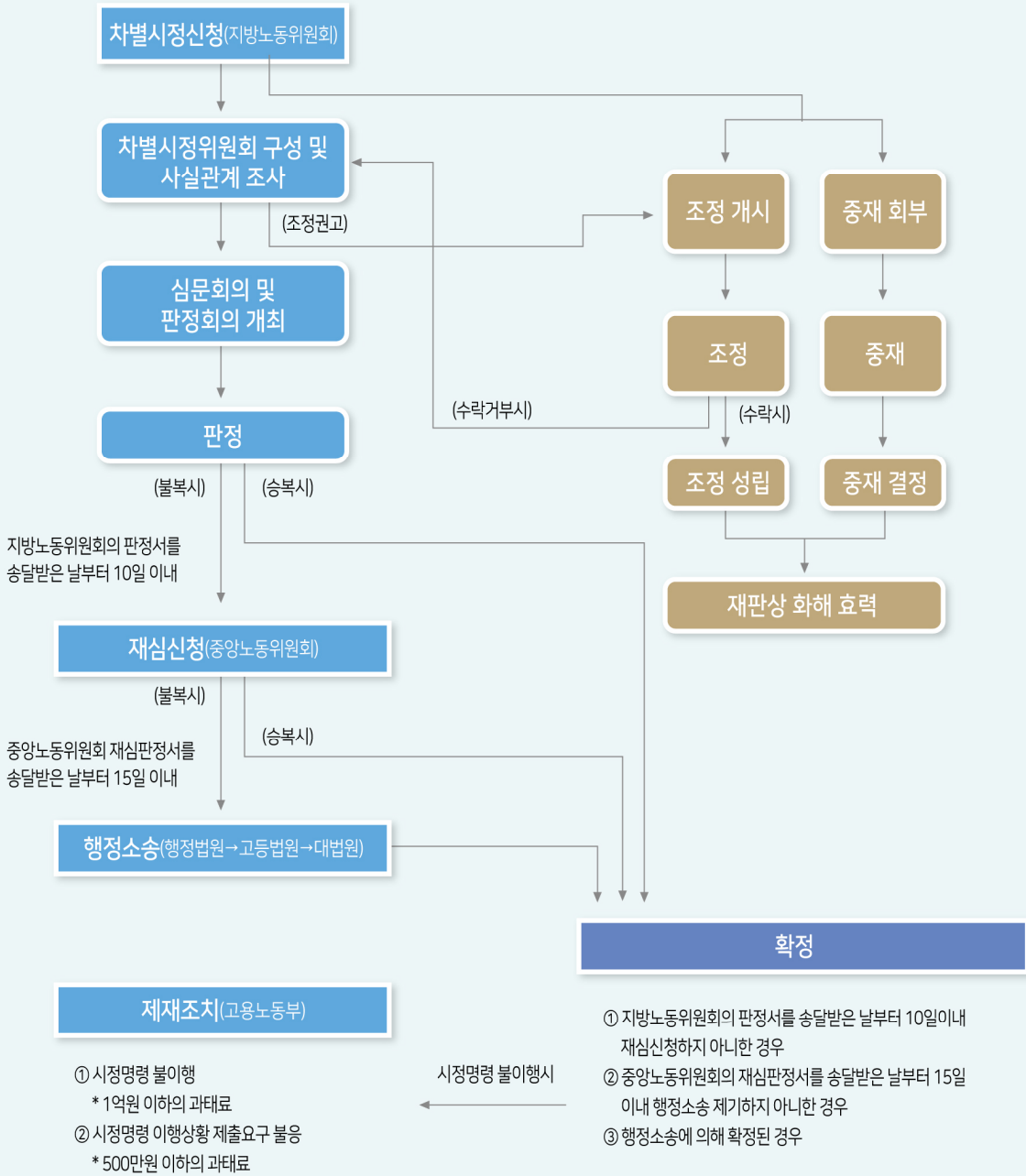
Ⅲ 주요업무 처리 절차

부당해고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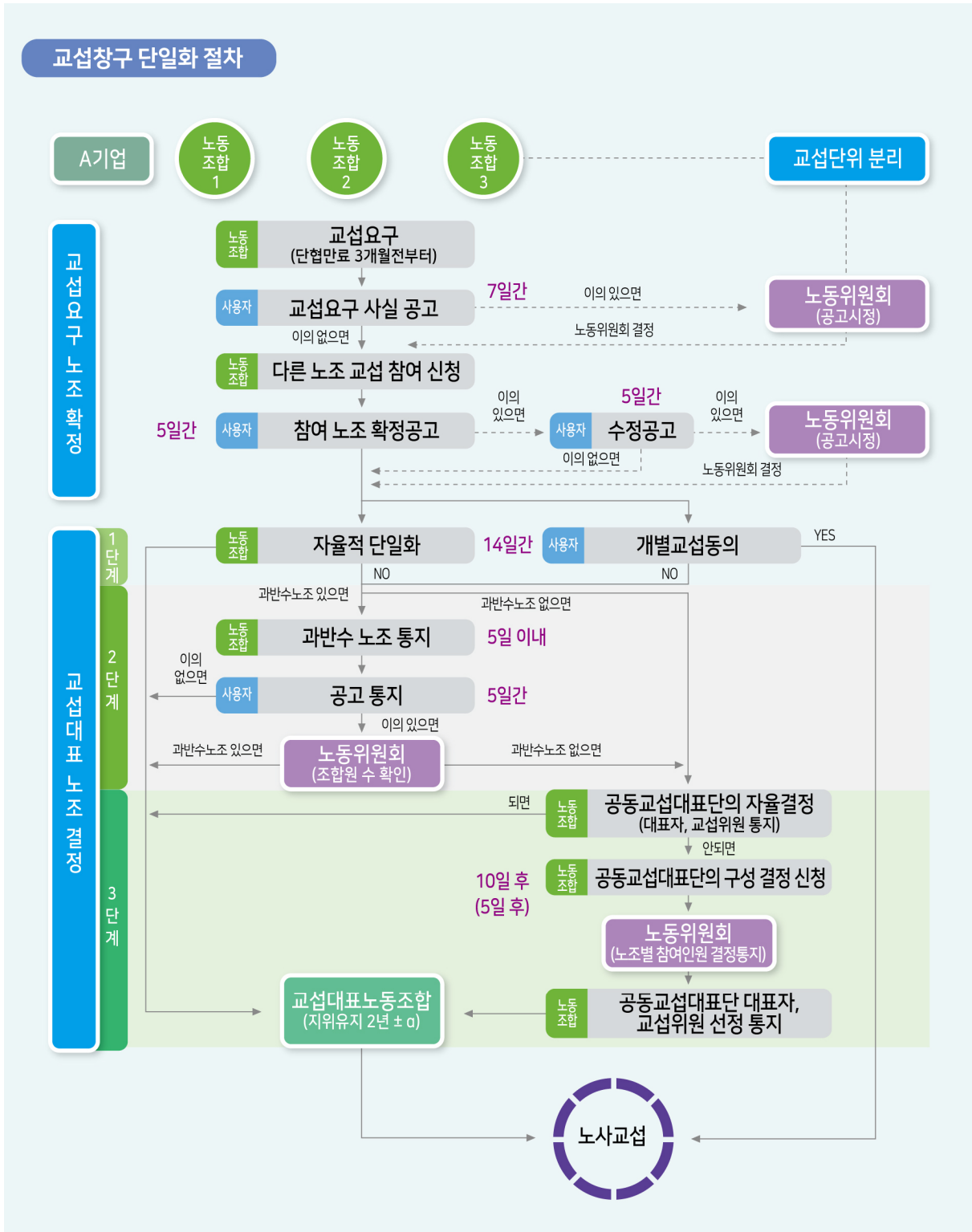


차별시정 사건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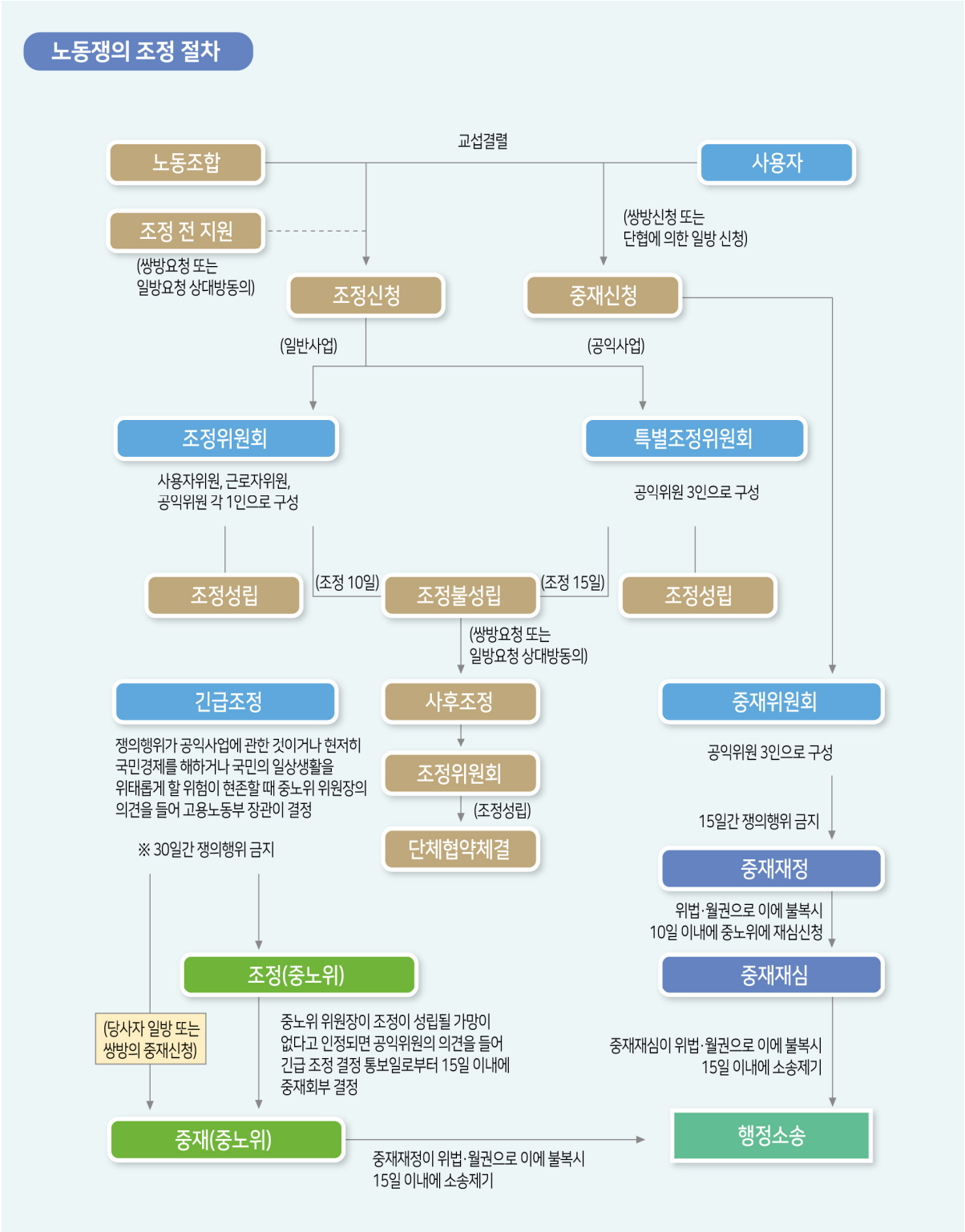
차별시정사건 처리절차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노동쟁의 조정 절차



2019 노동위원회 통계연보

발행일 : 2020년 5월
발행인 : 박 수 근
발행처 : 중앙노동위원회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 화 : 기획총괄과 (044) 202-8369
홈페이지 : <http://www.nlrc.go.kr>

<비매품>